

(國)(外)(事)(件)

## 書類提出効力發生時期

&lt;日本最高裁 1981年 4月 2日判決 1980年(行ツ)156號&gt;

## 1. 上告人：X

## 2. 被上告人：Y(特許廳長官)

## 3. 判決主文

當事者間의 東京高法 1980年(行ツ)92號 審決取消請求事件에 대한 同法院의 1980年 9月 29日 言渡判決에 대하여 상고인으로부터 全部破棄를 要求하였으나 이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상고인의 負擔으로 한다.

## 4. 事件概要

特許出願인인 上告인이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請求書를 登記郵便으로 提出한 바 相對인 特許廳의 住所가 發明協會로 記載됨으로써 잘못 送達되었다. 이 때 發明協會는 審判請求書를 「郵便物에 當協會의 所在地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청구서가 당협회에 송달되었으므로 특허청 앞으로 보내기 바란다」는 뜻과 特許廳所在地가 기재된 案内書를 同封하여 原告에 우편으로 返回하였다.

상고인은 審判請求期間經過後에 심판청구서를 다시 특허청에 郵送하였다. 상고인의 主張인 즉 登記郵便物受領證으로서 특허청에 提出한 우편물이 있었음은明白하며當時의 狀況은 심판청구서와 重複되는 登記에 의한 우편물은 없고 書

類發送案내에 따라 發明協會에 1976年 8月 26日着으로 되어있는 우편물과 같은 심판청구서가 있을 뿐이므로 이는 1976년 8월 24일에 심판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또 상고인은 우체국에 의한 過失與否를 따지면서 이 事案은 우체국이 전인 1976년 8월 24일에 심판청구를 했느냐의 여부가 爭點이 되고 있는데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을 誤解하고 있으며 釋明書, 通知書, 訴狀答辯書 등으로 特許廳內에 정해져 있는 심판청구서는 拒絶査定에 대한 심판청구서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이 高法이 誤診에 의한 판결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證據等으로 미루어 특허청에 우편물을 보내는 심판청구서의 제출은 사실이며 1976년 8월 24일 제출의 우편물은 特願 44-63755號의 심판청구서이므로 特許法上 發信主義와 심판청구 후의 30日間은 심판청구서의 補正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같이 1976년 8월 24일짜의 심판청구서가 判明된 이상 1976년 8월 31일짜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어도 違法이 아니므로 最高裁에서 特許法上規定을 解除해 달라고 상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특허청은 원고의 청구를 却下한다고 審決하였다.

判示要旨인 즉 本件은 特許法上의 彙責할 수 없는 理由에 의해 所定期間內에 審判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경우에 該當되지 않는다. 特허법상의 書類提出效力은 當該郵便物受取人住所나 居所 또는 事務所 등을 正確히 또는 實質的으로 同等하게 理解할 정도로 기재하였을 때 비로소 發生한다고 解釋함이 妥當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상고인은 最高裁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 5. 判決要旨

상고인의 上告理由에 대하여 原審이 그 適法의으로 確定한 事實에 의거하여 상고인이 1976年 8月 24日 本件에 關聯되는 심판청구서를 内容으로 하는 우편물을 郵遞局에 提出한 것으로써 特許法에 의거한 이 郵便物 提出日에 이 심판청구서가 특허청에 到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判斷은 正當하다고 是認할 수가 있으며 原判決에 所論의 違法이 없다. 論旨는 採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行政事件訴訟法 및 民訴法에 따라 裁判官全員一致의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